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관한 조건

본 조건은 고객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비동, 9층 (삼평동, 유스페이스 1)에 소재한 이타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공급자," 이하 고객과 공급자를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함)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적용된다.

1. 정의

- 1.1. "계정"은 접속이 제한된 공급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1.2. "어플리케이션"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 1.3. "계약"은 어플리케이션 제공에 관한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예: 제안서, 주문서 양식)를 의미한다.
- 1.4. "고객데이터"는 서비스, 저장공간 및/또는 계정의 사용과 관련해 고객이 제출한 또는 고객을 대신해 제출된, 또는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동으로 생성한 모든 데이터, 정보, 내용,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고객데이터에는 접속 및 등록 데이터도 포함된다.
- 1.5. "서비스 명세"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
- 1.6. "리소스"는 서비스 성능(저장 공간, 프로세서 용량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 1.7. "서비스 수준 계약" 또는 "SLA"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용성 및 유지보수 측면의 어플리케이션 품질 특성을 의미한다. SLA는 본 조건의 필수 부분이다.

2. 어플리케이션의 범위

- 2.1. 공급자는 오직 본 조건 및 본 계약에 참조되어 계약의 일부가 된 관련 첨부 문서만을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 2.2. 고객 또는 제3자의 계약조건은 공급자가 해당 계약조건을 적용을 특정하여 반대하지 않아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고객 또는 제3자의 거래 계약조건을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문서를 참조하더라도, 이는 해당 거래 계약조건의 적용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2.3. 양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사안 별로 체결된 개별 합의(부속 합의, 보완 그리고 수정 포함)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건에 우선한다.

3. 주제

- 3.1. 본 조건의 주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대가로 고객이 원격 접속을 통해 사용할 어플리케이션과 필요한 서버 인프라를 공급자가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조달하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은 견적서에 참조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서비스 명세나 상품 명세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3.2. 고객의 기존 시스템 구성과의 통합 인터페이스 적용은 본 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 서면 약정을 요한다.

3.3. 공급자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 제15조에 따른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해석되는 공급자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할 권리를 지닌다.

3.4.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작업명세서나 사용자 매뉴얼(www.etas.com/manuals) 또는 상품 명세서나 서비스 명세에 정의되어 있는 합의된 용도만을 위한 것으로, B2B 거래로 제한된다. 서면(작업명세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공급자의 상품이 제공되는 타겟시장을 위해 유효하다.

4.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인프라 제공

4.1.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합의된 시각부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서버 인프라(이하 "서버")에서 본 조건의 조항에 따라 현재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접속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3.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 공급자는 고객에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접속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4.4.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 및 사용을 위해 계정이 필요할 경우, 공급자는 고객이 본 조건에 동의한 후 고객에게 계정을 제공한다.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인증 확인서 기반 인증이 필요하다. 계정과 접속 인증데이터는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의 계정에서 수행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

4.5. 고객은 모든 비밀번호 및 PIN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비밀번호 및

PIN의 오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6. 공급자는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가용 리소스를 서버에 유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견적서를 참조한다. 해당 리소스의 용량은 주 계약(main contract)에 정의되어 있다. 고객은 리소스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계약상 합의된 리소스 사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 리소스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된다. 비용은 주 계약에 정의되어 있다.

4.7.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공급자는 고객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상법 및 세법에서 고객에 요구하는 보존기간을 준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 있다.

5.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가용성

5.1. 공급자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전적으로 공급자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 허브에 의존한다.

5.2. 공급자는 다음 이유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비가용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i) 정기 유지보수 작업 (예: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ii) 기타 계획된 가동 중단, (iii) 정당한 원인이 있거나 또는 특히 고객 인터넷 회선 두절로 인한 고객의 통신 연결(공급자의 데이터 센터 외부 통신 구간) 제공, 운영, 및 지원 부문의 장애 등,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비정기 유지보수 작업.

5.3. 상품 명세서나 서비스 명세 또는 SLA에서 정의된 가용성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계약상 정의된 가용성을 벗어나는 어플리케이션 비가용 기간(다운타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미 시작된 거래의 데이터가 다운타임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급자는 다운타임으로 손실된 데이터의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다운타임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소프트웨어 서비스 고장
- (2)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불가로 발생한 고장

5.4. 사용자 매뉴얼에 설명된 어플리케이션 기능 가용성은 고객이 마찬가지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에 규정된 시스템 요구사항을 준수했을 경우를 전제로 제공된다. 시스템 요구사항 준수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시스템 요구사항 변경과 공급자의 기술 시스템 변경에 관해서는 제15조가이 적용된다.

5.5. 공급자는 공급자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 허브에 한해 공급자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책임진다.

6. 지원

6.1. 공급자는 제공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최초 접점(FPoC)을 지원센터를 통해 고객에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은 장애에 대해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지원은 공급자의 정상영업시간에 제공되고, 고객은 공급자의 인터넷 웹 페이지 서비스 및 지원(https://www.etas.com/de/support/support_hotlines.php)에서 정상영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범위 내에서, 공급자 또는 고객은 각 장애 신고에 대해 티켓을 생성하고 분류한다. 고객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6.2. 지원은 한글 및 영어로만 제공된다.

6.3. 오류 신고자는 주기적으로 처리 상태를 통지받는다. 그러나, 공급자의 장애 티켓에서 장애의 원인이 제12.6조에 의거한 고객의 서비스 또는 수행, 또는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다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장애 티켓은 종료되고, 고객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6.4. 공급자는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 공급자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초래되는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유지보수 작업을 계획한다.

7. 공급자의 기타 서비스

7.1. 본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는 고객에게 현재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문서(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한다.

7.2. 특히 (고객의 시스템 및/또는 플랜트/기술 유닛에 대한) 통합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 등 공급자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고객은 그러한 서비스 수행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8. 사용권

8.1. 공급자는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의도된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및 양도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사용권을 부여한다.

8.2. SaaS 등 조항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별 라이선스 의무사항 충족이 명시적으로 요구될 경우, 충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해당 OSS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한 OSS 구성요소가 사용자 설명서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 자체에 설명되어야 한다.

- 8.3. 공급자는 원격 접속 별로 어플리케이션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한다. 고객이 영구 저장하도록 고객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고객은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사용할 권리가 없다.
- 8.4. 만일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수정, 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기타 변경을 적용하면, 그 수정 또는 확장 프로그램을 고객이 주문했고 금액을 별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제8조 조항이 또한 적용된다.
- 8.5. 고객은 본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는다. 특히,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없다.
 - a) 본 조건에서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한;
 - b) 제8.1항에 의거,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 또는
 - c)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정을 복제하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특히 임대 및 대여하는 권한.
- 8.6. 고객은 본 조건의 조항이 준수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8.7. 고객이 제8조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고객에게 사전 서면 통지 후, 만일 접속 차단으로 해당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은

차단 사유 제거 시 즉시 해제된다. 고객이 제8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공급자가 서면으로 위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고객이 그러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는 한 공급자는 통지 없이 사유에 의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공급자의 배상청구권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지식재산

고객데이터를 제외한 텍스트, 그래픽, 로고, 버튼 아이콘, 이미지, 오디오 클립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내용은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라이선서의 재산이며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10. 고객데이터

- 10.1.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내용은 접속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 10.2. 고객은 계약 실행을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한 서버 인프라에 입력된 고객데이터를 사용할 권한, 특히 동 목적(예: 데이터 백업 용도)으로 고객데이터를 복제하고, 제3자에 고객데이터를 공개하며, 고객데이터를 수정하고, 고객데이터 접근을 위해 고객데이터를 제공하는 권한을 공급자에 부여한다.
- 10.3. 고객은 다음을 보증한다.
 - a) 고객 및/또는 고객의 라이선서는 본 조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고객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b) 고객데이터는 본 조건 또는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제3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 10.4. 해당 고객데이터가 고객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한, 고객은 고객데이터의 보안에 대해 책임진다. 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자신의 고객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의무가 있다. 고객은 언제나 고객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각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0.5. 저장된 고객데이터가 불법이거나 및/또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및 저장공간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급자에게 법원, 당국, 및/또는 기타 제3자의 통지가 있을 경우, 불법성 및/또는 특허 권한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차단 사유와 함께 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차단은 의심이 해소되는 즉시 해제된다.

11. 결함 클레임

- 11.1. 고객이 개별 결함에 대해 통지할 경우, 공급자는 문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결함을 처리한다. 이는, 공급자 책임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중단되는 기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자의 책임이 있는 성능 결함에 기반한 모든 잠재적인 손해 배상은 본 조건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 11.2.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계약을 준수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준수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제외된다. 사용의 계약 준수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두 번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가 있었을 때이다.

- 11.3. 어플리케이션 무상 제공 시, 공급자는 중대한 결함 및/또는 소유권 결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기를 의도해 해당 중요 결함 및/또는 소유권 결함을 은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보수, 세금, 가격 변경

- 12.1. 보수 금액은 견적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본 약정에서 합의된 보수는 간접세(매출세, 상품·서비스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특별 상품·서비스세 등과 이에 대한 부가금 및 가산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세금은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고객이 추가로 부담한다.
- 12.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의 모든 청구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청구서의 지급기일 이내에 어떠한 공제도 없이 공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
- 12.3. 견적서에서 합의된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별도의 견적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 12.4. 각 당사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의 거래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에 부과되는 제 세금 및 기타 정부 수수료와 부과금 (및 모든 벌금, 이자, 기타 추가금)을 파악 후 납부할 책임이 있다.
- 12.5. 라이선스/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고객이 소재한 국가의 현지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지급되는 보수에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소재한 국가와 공급자가 소재한 국가 간에 체결된 현행 이중과세협약에 따른 경우 등) 원천징수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감면이 확립된 규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12.6. 계약 체결 후 12개월 기간 경과 후, 공급자는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 통지로 계약 보수를 증액할 권한을 최초로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증액은 가격 인상 효과 발생 시점에 유효한 공급자의 일반 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 그와 같이 보수가 조정된 항목에 대한 추가 인상은 마지막 가격 조정 시점에서 12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요구할 수 있다. 보수 조정 시, 인상분이 마지막 적용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조정된 보수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6주 이내에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3. 고객의 의무

13.1. 고객은 계약관계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요구되는 모든 협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고객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a) 고객에게 배정된 사용 허가 및 접속 허가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동 데이터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고객은 허가되지 않은 자가 접속 데이터 및/또는 비밀번호를 취득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시스템 요구사항을 생성한다;
- c) 제8조 사용권과 관련한 제약사항/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러한 모든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향후 위반을 예방하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 d)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적법한 또는 다른 허가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처리 또는 사용된 부분에 대해 영향을 받은 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획득한다;
- e) 데이터와 정보를 공급자에게 전송하기에 앞서, 데이터와 정보의 바이러스 및 기타 멀웨어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f) 계약 이행 상의 결함을 인지 후, 공급자에게 이메일로 즉시(늦어도 익영업일까지) 통지한다.

13.2. 고객은 다음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 a) 어플리케이션의 비공개 영역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반한 기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획득할 권한;
- b) 로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또는 기타 유사한 데이터 수집 또는 추출 도구를 사용하거나, 문서에 정의된 API 엔드포인트 밖의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접속, 획득, 복제, 또는 감시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또는 방법론을 사용할 권한;
- c) 고객데이터와 함께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감염되었거나 해로운 구성요소를 고의로 전송하거나, 또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권한;
- d)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테스트, 스캔 또는 검사할 권한; 또는
- e)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또는 사용성에 지장을 주는 장치,

소프트웨어 또는 루틴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의로 타 데이터, 시스템 또는 통신을 파괴하고, 지나친 부하를 생성하며, 또는 유해하게 간섭하고, 사기를 목적으로 편취하거나 캡처할 권한.

14. 정보보호

- 14.1.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 관계 및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직원이 데이터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단, 이미 적절히 행동할 일반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4.2. 고객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에게 관련 데이터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처리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고, 침해가 발생 시, 고객은 공급자를 제3자 청구로부터 면책하여야 한다.
- 14.3. 공급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객데이터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객은 해당 부분에 한해 고객데이터 처리에 동의한다.
- 14.4. 제안된 서비스 내에서, 공급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따른 정보처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처리 계약이 적용되고, 동 계약은 아래 링크(www.etas.com/AGB-ETASGmbH)에서 계약조건(이타스코리아) 항목에 위치하며, 고객 요청 시, 공급자가 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14.5. 제14.1항 내지 제14.4항까지의 의무는 개인 데이터가 공급자의 영향 영역 내에 위치하는 동안 및 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존속한다.

15. 계약 변경

- 15.1. 공급자는 추가 개발 및 기술 진보에 따라 본 조건과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변경된 기술 또는 법적 조건에 맞도록 수정할 권한을 지닌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기존의 계약 관계에도 적용된다.
- 15.2.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및/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으로 인해 미룰 수 없는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은 현재까지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성을 제한하거나 기타 사소하지 않은 단점(예: 적응 비용)을 수반하므로 고객은 그러한 변경사항의 예정 발효일로부터 유효기준 최소 30일 이전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고객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시간 제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관계는 당시까지 적용되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 제기 시, 공급자는 1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고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고객은 이의 제기 권한과 변경 통지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16. 기밀유지

- 16.1. 양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획득되고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기밀정보"). 공급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단, 해당 하도급업자에게는 상응하는 기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나아가, 기밀 정보는 목적에 관계없이

-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 16.2. 제16.1항의 의무는 수신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 또는 정보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수신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이거나, 수취일 전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이거나, 또는 수취일 후 제3자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밀준수 의무에도 구속받지 않고 알게 된 정보; 또는
 - b) 수취일 전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 또는
 - c) 수신자의 책임없이 수취일 후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 또는
 - d) 통지자가 서면 선언으로 수신자에게 기밀유지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정보.
- 16.3. 양 당사자는 사전 상호 협의에 따라 협력에 대한 진술만을 공개할 수 있다. 고객은 공급자의 대표 또는 커머셜 파트너로 나설 권한이 없다. 공급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은 참조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장래 또는 현재의 계약 협력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 16.4. 제16.2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16.1항의 의무사항은 계약 종료 후 5년간 유효하다.
- 17. 책임**
- 17.1. 공급자는 법률 조항에 따라 다음 경우에 책임이 있다.
- a)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 b) 제조물책임법의 조항에 따라,
 - c) 공급자가 제공한 보증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 d) 인체 생명 또는 사지 또는 건강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 17.2. 그 외 기타 방법으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및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자가 의무 이행을 위해 섭외한 사람들은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으나, 책임 금액은 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가능했고 이런 유형의 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제한된다. 중대한 계약 의무란 그 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이루고, 고객이 의존할 수 있는 의무를 가리킨다. (이하 “중대한 의무”)
- 17.3.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엄격 책임(“무과실 책임”)은 제외된다.
- 17.4. 제17.1항의 준수를 전제로, 고객이 제10.4항에 따라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고 그 결과 손실된 고객데이터를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7.5. 책임에 대한 위의 제한사항은 공급자의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급자가 섭외한 자의 과실인 경우 적용되고, 공급자의 직원, 대표, 회사 조직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 18. 계약기간, 해지**
- 18.1. 달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이다.
- 18.2.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통지로 해지하지 않는 한, 3개월 기간동안 자동 갱신된다.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 도래하는 첫번째 해지 가능 날짜에 계정도 해지된다.
- 18.3. 고객이 특히 지급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하여 행동할 경우, 공급자는 고객의 다른 계약상 그리고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유예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8.4. 고객이 지불을 중단하거나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또는 채무 면제를 목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신청할 경우, 공급자는 유예기간 제공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18.5. 다음의 경우, 공급자는 유예기간 제공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a) 고객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고객이 공급자에 대한 지불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 b) 고객이 채무 지불 능력을 상실한 경우.
- 18.6.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법적 및/또는 규제 변화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18.7. 본 제18조에 언급된 권리는 모든 법적 권리에 추가되며 그러한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 계약 해지 시 및 해지 후 의무사항**
- 공급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보유기간이 없다면 계약 해지 후 1개월 후에 공급자의 모든 시스템에서 고객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해당 고객데이터가 추출가능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한, 고객은 계약 해지 또는 앞서 언급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의

- 책임으로 고객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한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별도로 합의된 수수료를 대가로 공급자는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20. 수출 통제 및 통관**
- 20.1.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되는 (금수조치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 (재)수출 통제 및 관세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대외 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 하의 의무사항 이행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될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 20.2. 라이선스, 승인 또는 대외무역법 상의 유사 요구사항(이하 "승인")으로 인해 본 계약 하의 의무사항 이행이 지연될 경우, 해당 의무사항의 이행 시기는 그와 상응하도록 연장/조정되고, 양 당사자는 그러한 지연으로 인한 미준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신청 후 12개월 내에 승인이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해당 승인이 필요한 의무사항 수행 범위 안에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 20.3. 각 당사자는 제20.1항의 이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제20.2항에 따라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에 대해 인지할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 20.4.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와 문서에는 최종 고객/사용자 정보, 인도품과 서비스의 목적지 및 의도된 최종 용도가 포함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객이 공급자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0.5. 고객이 (특히 고객의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 인도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은 관련 대외무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이 동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0.6.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제20.1항, 제20.2항, 제20.4항, 및 제20.5항에 의거한 계약 해지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 거부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어떠한 배상 청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7. 7.1 관세 국경을 넘어 공급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업송장, 인도증서 등 화물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세관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공급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에 무상 인도되는 경우, 고객은 견적 송장에 "세관통관용(For Customs Purpose Only)" 라는 문구와 더불어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한 가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동 가치는 하드웨어와 개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7.2 인도 서류나 견적 서류에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타 데이터(맵 데이터 등)의 국가간(customs-cross-border) 제공이나 공급은 전자적 수단(이메일 또는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만 수행된다. 본 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된 소프트웨어)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기타사항

- 21.1.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대한민국법의 관할을 받는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 21.2. 계약 체결 후, 고객이 공급자에 제공하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 및 통지(예: 시간제한 설정, 결함 통보, 철회 또는 가격인하 선언)는 반드시 서면 형태로 이행되어야 효력을 지닌다.
- 21.3. 본 조건의 어떠한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화되거나, 집행불가능하거나 집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